

2021 총회 보고서

* 기간 : 2021. 2. 24(수)~2.26(금)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3길 29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신관 401호

TEL: 02-747-1225 FAX: 02-764-1225

www.koreandiakonia.org kd@koreandiakonia.org

■ 목차

01. 조직	
가. 법인 이사 명부	3
나. 조직(임직원) 명부	3
02. 회의록	
가. 총 회	4
나. 이사회	6
03. 2020년 사업보고	8
04. 2020년 감사보고	11
05. 2020년 결산보고	13
06. 2021년 사업계획	15
07. 2021년 예산(안)	19
08. 정관 대조표	20
09. 법인 정관	21
10. 회원규정	29

1. 조직

가. 법인 이사 명부

고명진 (수원중앙침례교회)	손인용 (덕수교회)
권태진 (군포제일교회)	오정현 (사랑의교회)
김동배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오정호 (새로남교회)
김성이 (한국관광대학교)	유만석 (수원명성교회)
김종생 (빛과소금)	정무성 (송실사이버대학교)
김한호 (춘천동부교회)	정성진 (크로스로드)
박경배 (송촌장로교회)	황성은 (창동염광교회)
박동찬 (일산광림교회)	황덕영 (새중앙교회)
박종삼 (한국개신교 사회복지사연구소)	

※ 가나다 순

나. 한국교회봉사단 조직(임직원) 명부

고 문	김경원 박경조 박종삼 박종화 신경하 이정익 장중현 장차남 조성기 최희범(상임)
명예회장	김삼환 손인용 오정현
대표회장	정성진
공동대표(8)	오정호(합동) 김봉준(기하성) 양병희 / 유만석(대신) 윤성원(기성) 신상현(고신) 권태진(합신) 박성민(기관)
상임단장(7)	황성은(통합,국내사업본부장) 박동찬(기감,국내재난본부장) 황덕영(백석대신,북한사업본부장) 김한호(통합,해외사업본부장,회계) 박철규(대신,서기) 김문훈(고신) 김동배(평신도,디아코니아포럼)
중앙위원(79)	길성운 김인기 김종준 모상련 박명배 박성규 옥성석 이문희 이상화 이승희 정영교 최종천 홍문수 (합동13) 김만준 김영걸 김영철 김운성 김종생 김한호 박영철 배성식 신광호 심영섭 이상학 장경덕 최영태 (통합13) 곽주한 김병삼 김상현 방원철 서 철 서호석 유기성 주성민 지성래 (기감9) 김명현 신성남 정재우 함덕기(기하성4) 문강원 박경배 박응순 이규환 임영섭 조한권 (대신6) 김종웅 박순영 서도형 성창용 윤창용 이기용 조원근 지형은 (기성8) 김근중 김호민 박상완 박정근 박창환 안희목 윤재철 정승룡 (기침8) 김철봉 박홍철 정현구 최한주 (고신4) 김원광 박삼열 이주형 이철호 장덕만 (합신5) 강준모 권오륜 박유철 육순중 장 빈 최홍규 (기장6) 최일도 허기복 김원일 (기관 3)
감 사	김옥현 박홍자
사무총장	천영철

2. 회의록

가. 총회 회의록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총회 회의록

일 시 : 2020년 6월 19일(금) 11:40~12:10

장 소 :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신관 4층 세미나실

■ 회의

정성진 이사장의 사회로 회의를 시작하다.

1. 개회선언

의장이 대의원을 점명하니 24명 중 참석 10명 위임 8명으로 개회를 선언하다.

2. 회순 채택

의장이 회순채택 가부를 물으니, 유인물대로 채택하기로 가결하다.

3. 보고사항

가. 2019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2019년 사업 및 결산을 천영철 사무총장이 보고하니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나. 2019년 감사보고

2019년 감사결과를 김옥현 감사가 보고하니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4. 결의사항

가. 의안1. 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2020년 사업계획과 예산계획을 천영철 사무총장이 보고하니. 그대로 승인하기로 하고 필요 가감을 이사장과 실무에게 맡기기로 가결하다.

나. 의안2. 정관변경

아래와 같이 이사회에서 정관변경안을 발의한대로 정관을 개정하기로 가결하다.

현행	개정(안)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6-46번지 기독교회관 705호에 둔다. ② (생략) ③ (생략) 1. 서울지회: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6-46번지 기독교회관 705호 2. (생략)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3길 29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신관 401호에 둔다.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서울지회: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3길 29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 신관 401호 2. (현행과 같음)

3. (생략) 4. (생략) 5. (생략) 6. (생략) 7. (생략)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7. (현행과 같음)
제9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①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감사 2인 3. 이사(이사장을 포함한다.) 16인	제9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①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감사 2인 3. 이사(이사장을 포함한다.) 17인

주) 주사무소 이전은 2020년 7월 10일

다. 임원 선임

임기 만료에 따른 임원(이사) 선임을 아래와 같이 하기로 가결하다.

- ◇ 임기만료 : 이영훈 정무성(2017.05.28.~2020.05.27.)
박종삼 박동찬(2017.07.09.~2020.07.08.)
- ◇ 연임추천 : 박종삼(2020.07.09.~2023.07.08.)
박동찬(2020.07.09.~2023.07.08.)
- ◇ 신임추천 : 정무성(2020.07.09.~2023.07.08.)
김한호(2020.07.09.~2023.07.08.)
황덕영(2020.07.09.~2023.07.08.)

■ 폐회

이사장 정성진 목사의 기도로 폐회하니 오후 12시 10분이었다.

나. 법인 이사회 회의록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이사회 회의록

일 시 : 2020년 6월 19일(금) 11:00~11:40

장 소 :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신관 4층 세미나실

■ 경건회

김동배 이사의 인도로 경건회를 시작하다. 김성이 이사의 기도 후 찬송가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을 1절부터 4절까지 제창하다. 박종삼 이사가 요한복음 3장 16-17절 본문으로 설교 후 손인웅 이사의 축도로 경건회를 마친다.

■ 회의

정성진 이사장의 사회로 회의를 시작하다.

1. 회원점명 및 개회

사무총장이 회원을 점명하니 참석 8명 위임 6명으로 정관 제24조에 의거하여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정원이 되어 사회자가 개회를 선언하다.

- 참석 : 정성진 손인웅 고명진 김동배 박종삼 김종생 김성이 오정현(代연승철)
- 위임 : 황성은 권태진 오정호 유만석 박동찬 정무성
- 불참 : 박경배 이영훈
- 배석 : 김옥현(감사) 박홍자(감사) 천영철(사무총장)

2. 전회의록 채택

전회의록을 사무총장이 보고하니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3. 2020년 총회 보고사항

가. 2019년 사업보고를 천영철 사무총장이 보고하니,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나. 2019년 감사보고를 김옥현 감사가 보고하니,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다. 2019년 결산보고를 천영철 사무총장이 보고하니,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라. 2020년 사업계획과 예산계획을 천영철 사무총장이 보고하니, 그대로 받기로 하고, 필요시 가감을 이사장과 실무에게 맡기기로 가결하다.

4. 2020년 총회 부의사항

가.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정관변경의 건

사무실 이전에 따른 주소변경과 이사수를 아래와 같이 총회에 부의하기로 가결하다.

현행	개정(안)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6-46번 지 기독교회관 705호에 둔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3길 29 한 국교회100주년기념관 신관 401호에 둔다.

② (생략) ③ (생략) 1. 서울지회: <u>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6-46번지 기독교회관 705호</u> 2. (생략) 3. (생략) 4. (생략) 5. (생략) 6. (생략) 7.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서울지회: <u>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3길 29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 신관 401호</u>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7. (현행과 같음)
제9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①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감사 2인 3. 이사(이사장을 포함한다.) 16인	제9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①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감사 2인 3. 이사(이사장을 포함한다.) 17인

나.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임기만료 이사 선임의 건

임기만료 이사 선임의 건은 아래와 같이 추천하여 총회에 부의하기로 하기로 하고, 미진한 사항의 결정은 이사장에게 위임하기로 가결하다.

- ◇ 임기만료 : 이영훈 정무성(2017.05.28.~2020.05.27.)
박종삼 박동찬(2017.07.09.~2020.07.08.)
- ◇ 연임추천 : 박종삼(2020.07.09.~2023.07.08.)
박동찬(2020.07.09.~2023.07.08.)
- ◇ 신임추천 : 정무성(2020.07.09.~2023.07.08.)
김한호(2020.07.09.~2023.07.08.)
황덕영(2020.07.09.~2023.07.08.)

5. 안건사항

가. 한국교회봉사단 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 변경의 건

4인 공동대표회장 규정을 1인 대표회장으로 변경하기로 가결하다.

현행	개정(안)
제3조(임원회 구성) 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공동대표회장 4인 ②공동대표 10-15인 ③상임단장 10-15인 ④대표회장이 추천하는 약간명	제3조(임원회 구성) 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대표회장 1인 ②공동대표 10-15인 ③상임단장 10-15인 ④대표회장이 추천하는 약간명

나. 한국교회봉사단 임원 선임의 건

대표회장에 정성진 목사, 북한사업본부장에 황덕영 목사, 해외사업본부장에 김한호 목사를 선임하기로 하고, 그 수정 및 가감을 이사장에게 맡기기로 가결하다.

6. 기타보고사항

- 가. 2019년 강원산불피해 구호사업 결과를 보고하다.
- 나. <서울특별시 2020 종교단체 지원사업> 추진 내용을 보고하다.

■ 폐회

이사장 정성진 목사의 기도로 폐회하니 오전 11시 40분이었다.

3. 2020년 사업보고

1. 한국교회가 함께하는 2020 설날 사랑나눔

- 가. 일시 : 1월 21일(화) 오후 3시
- 나. 장소 : 용산구 동자동 성민교회
- 다. 주최 : 한국교회봉사단, 한국교회총연합
- 라. 대상 : 동자동 쪽방주민 1,200세대, 돈의동 쪽방주민 500세대
- 마. 내용 : 동자동 주민 설날 선물 포장 및 방문전달
- 바. 자원봉사 : 일산광림교회 자원봉사자 30여명 참여

2.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피해복구를 위한 모금 캠페인

- 가. 모금기간 : 2020년 3월 2일 ~ 4월 30일
- 나. 모금방법 : 국민일보, 홈페이지, 임회원교회
- 다. 국내 지원내용
 - 1) 대구시, 쌀국수 10만개 & 향균살균제 10L 1,000개 지원
대구극독방송, 쌀국수 2만개 & 향균살균제 10L 500개 지원
곡성 나눔영성원, 쌀국수 3만개 & 향균살균제 10L 500개 지원
 - 2) 코로나 피해 대구 및 지역 134개 미자립교회 월세지원 (1억원)
 - 3)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 8개지역
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주, 예천, 봉화, 청도 187개 미자립 교회에 해당 지역
기독교총연합회를 통해 각 30만원씩 총 5,600만원을 지원
 - 4) 파주, 고양, 인천 김포 등 경기지역 개척교회에 5,000만원 지원
- 라. 해외 지원내용
 - 1) 재일대한기독교회를 통해 일본 내 19곳의 한인교회에 마스크 2만장 지원
 - 2) 범아프리카교회협의회를 통해 아프리카 교회 2만달러 지원
 - 3) 아이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1천만원 지원

3. 정기이사회 및 정기총회

- 가. 일시 : 6월 19일(월) 오전 11:00
- 나. 장소 :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신관 4층 세미나실
- 다. 내용 : 정기이사회 및 총회

4. 수해 피해 이웃을 돕기 위한 모금 캠페인 및 지원사업

- 가. 모금기간 : 2020년 8월 7일 ~ 9월 14일
- 나. 모금방법 : 국민일보, 홈페이지, 임회원교회
- 다. 지원내용

- 1) 각 지역 기독교연합회를 통해 물품 및 후원금 지원
(물품 | 여름캐주얼 17,290장, 5억원 상당 / 신원그룹 후원)

	지역	물품 지원	후원금 지원
1	철원군기독교연합회	1,000벌	10,000,000원
2	구례군기독교연합회	3,000벌	20,000,000원
3	곡성군기독교연합회	1,500벌	20,000,000원
4	하동군기독교연합회	2,100벌	10,000,000원
5	남원시기독교연합회	2,100벌	20,000,000원
6	천안시기독교연합회	2,100벌	25,000,000원
7	아산시기독교연합회	1,500벌	25,000,000원
8	농촌목회훈련원	700벌	10,000,000원
9	문산읍기독교연합회	700벌	10,000,000원
10	금산군기독교연합회	2,300벌	10,000,000원

- 2) 전국 수해피해지역 중고등학생, 장학금 전달

일 시 : 11월 25일(수) 오후4시

장 소 :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신관 4층 세미나실 (ZOOM)

지원대상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도 철원, 전남 곡성, 구례, 전북 남원, 경남 하동, 충남, 금산, 아산, 경기도 문산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 24명

지원내용 :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줌(ZOOM)을 통해 전달식 진행
중학생 3명, 고등학생 21명에게 1620만원 지원

전달식 순서

경과보고 / 천영철 사무총장

격려의 말씀 / 정성진 이사장

장학금 전달 / 대표 이은서 학생(문산읍기독교연합회)

감사의 말씀 / 문산읍기독교연합회 윤용선 회장

5. 한국교회가 함께하는 2020 추석 사랑나눔

가. 일시 : 9월 25일(금) 오후1시

나. 장소 :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

다. 주최 : 한국교회봉사단, 한국교회총연합

라. 대상 : 동자동 쪽방주민 1,200세대, 돈의동 쪽방주민 500세대

마. 내용 : 추석 선물 전달

6. 한국교회가 함께하는 2020 성탄절 사랑나눔

가. 일시 : 12월 21일(토) 오후3시

나. 장소 : 용산구 동자동 성민교회

다. 주최 : 한국교회봉사단, 한국교회총연합

- 라. 대상 :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1,200세대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 500세대
- 마. 내용 : 성탄 선물 전달
환우 심방 및 치료비 지원

7. 돈의동 쪽방촌 주민 공동체 ‘해뜨는 주민 사랑방’ 지원

- 가. 기간 : 2020년 1월 ~ 12월
- 나. 내용 : - 절기별 선물 전달 및 협동사업 정기활동 지원
- 주민 반찬나눔 (매주 70여명)

8. 북한 영유아 영양지원 모금 캠페인

- 가. 기간 : 2020년 1월~12월
- 나. 내용 : 유엔 세계식량계획(WFP)과 협력하여 북한 5개도 (강원도, 함경북도, 함경남도, 황해북도, 황해남도) 영유아 237,736명의 영양강화식품 지원
- 다. 모금방법 : 국민일보 광고 및 임직원교회

9. 연대사업

- 가. 한국교회총연합 (협력단체)
- 나. 한국기독교사회복지실천학회 (협력단체)
- 다. 한국자원봉사협의회 (회원 단체)
- 라. 종교계자원봉사협의회 (공동회장 단체)
- 마. 전국재해구호협회 (이사 단체)
- 바. KCOC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회원단체)
- 사. 유엔세계식량계획 WFP (협력단체)

10. 홍보사업

- 가. 홈페이지 운영
국문 <http://www.koreandiakonia.org> /영문 <http://en.koreandiakonia.org>
- 나. 온라인 홍보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KD1225>
유 튜 브 <http://www.youtube.com/c/한교봉KD>
- 다. 언론 광고
 - 코로나19 극복 모금 캠페인 (국민일보 / 2020.03.12)
 - 해외코로나19 극복 모금 캠페인 (국민일보 / 2020.05.04)
 - 수해피해 이웃돕기 모금 캠페인 (국민일보 / 2020.08.11)
- 라. 홍보물 제작
 - 2020년 연차보고서 제작



4. 2020년 감사보고서

감 사 보 고 서

(사)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대표회장 귀하

본 감사는 2021년 1월 28일 14시부터 귀 기관의 2020년도 중
에 이루어진 재정 및 행정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
사에 임하면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감사 원칙을 준수하였으며 감
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2021. 01. 28.

감사 김 옥 현 
감사 박 홍 자 (인) 

별 첨 : 감사의견서 1부 끝.

감 사 의 견 서

1. (사)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가. 감사에 임하면서 다음의 장부 및 부책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 1) 수입 지출에 따른 각종 대장 및 입출금 전표
- 2) 각종 영수증 확인 및 편철상태
- 3) 수령한 세금계산서 편철보관상태
- 4) 각종 공문서 수발 및 정리상태
- 5) 지출 계정별로 타당하게 지출하였는지 등

나. 수입 및 지출(전년도 이월금포함)을 검토한바

2019년도 이 월 금 : 221,005,267원

2020년도 총 수입금액 : 716,733,141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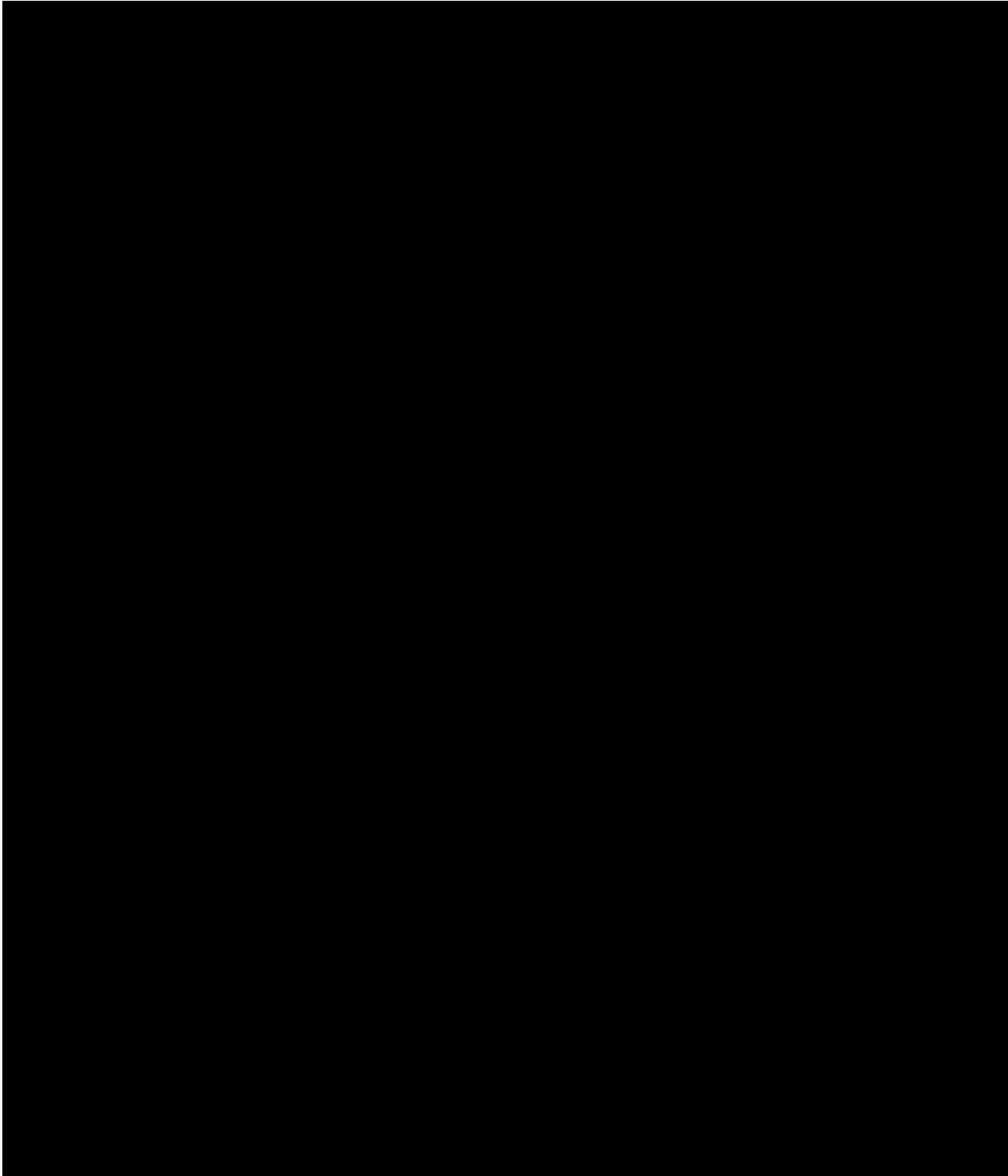
2020년도 총 지출금액 : 675,589,67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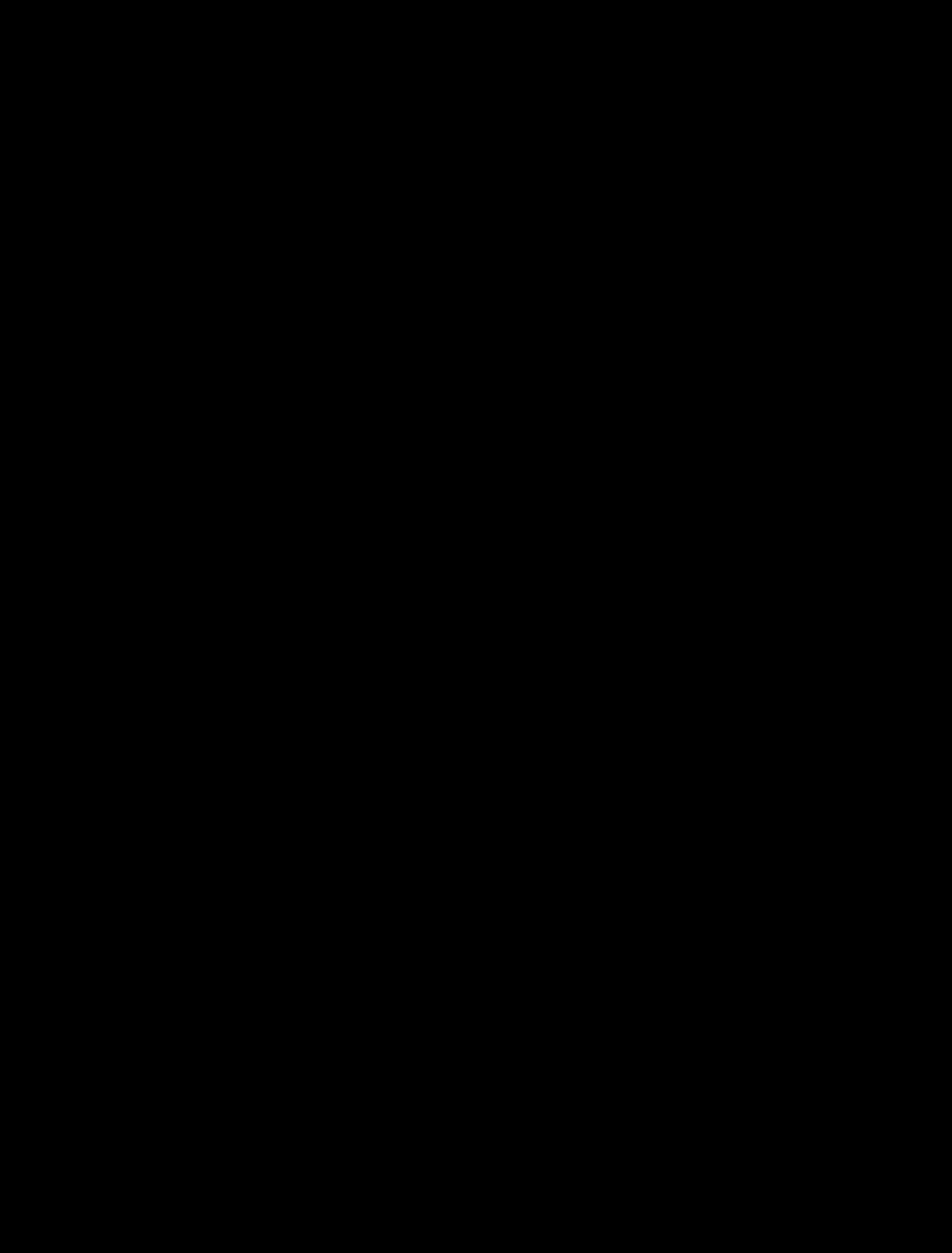
잔 액 : 262,148,738원입니다.

(통장잔고 262,057,357원 /보유현금 91,381원)

다. 감사결과 월별 재정처리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고 각종 부책 등의 정리도 잘 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수입 지출에 관한 각종 영수증 은 행잔고증명 등 관계 자료를 검토한바 정확하였습니다.

5. 2020년 결산보고서





6. 2021년 사업계획

1. 조직사업

가. 사업목표

- 임원 및 회원 조직관리 및 확대사업

나. 사업기간

- 2021년 1월 ~ 2021년 12월

다. 사업내용

- 정기임원회의 및 임원 간담회
- 정기이사회 및 정기총회
- 7개 지회(서울, 경기, 인천, 충청, 영남, 호남, 강원지회) 조직 및 방문

라. 사업예산

- 5,000,000 원

2. 국내 재난구호 사업

가. 사업목표

- 지진, 태풍 등으로 인한 국내 재해 발생시 현장 실사 및 긴급구호

나. 사업기간

- 재해발생시

다. 사업내용

- 재해발생시 현장 실사단을 파견하고 초기 긴급구호 사업 진행
- 신속한 초기 실사 및 구호활동을 위한 긴급구호 기금조성
- 재해 모금활동 및 구호/복구사업

라. 사업주관: 한국교회봉사단 국내재난본부

사업협력: 한국교회총연합

마. 사업예산

- 20,000,000 원

3. 국내 소외계층 지원사업

1) 절기사업

가. 사업목표

- 주요 절기에 소외계층 위로 및 지원

나. 사업기간

- 2021년 1월 ~ 2021년 12월

다. 사업내용

- 설날, 추석, 성탄절 등 절기시 사업진행

- 쪽방주민,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위로잔치 및 선물 전달
- 라. 사업주최: 한국교회봉사단, 한국교회총연합
- 사업주관: 한국교회봉사단 국내사업본부
- 사업후원: 서울특별시
- 마. 사업예산
 - 45,000,000 원

2) 돈의동 쪽방촌 주민 공동체 지원사업

- 가. 사업목표
 -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 주민 자립과 협동 사업 지원
- 나. 사업기간
 - 2021년 1월 ~ 2021년 12월
- 다. 사업내용
 - 돈의동 쪽방촌 주민 500세대의 “헤뜨는 사랑방” 주민 공동체 협동사업 사업 지원
- 라. 사업주관: 한국교회봉사단 국내사업본부
- 마. 사업예산
 - 5,000,000 원

3) 희귀난치성질환(엔젤만신드롬) 환우 돌봄사업

- 가. 사업목표
 - 희귀성난치성질환인 엔젤만신드롬 환우 및 가족 돌봄
- 나. 사업기간
 - 2021년 1월 ~ 2021년 12월
- 다. 사업내용
 - 환자가족들의 휴식을 위한 가족캠프 지원 (연1회)
- 라. 사업주관: 한국교회봉사단 국내사업본부
- 마. 사업예산
 - 5,000,000 원

4. 북한사업

- 가. 사업목표
 - 북한지역 5세이하 영유아 영양지원 사업
- 나. 사업기간
 - 2021년 1월 ~ 2021년 12월
- 다. 사업내용
 - 북한 영유아 영양강화식품 지원
- 라. 사업주관: 한국교회봉사단 북한사업본부
- 마. 사업예산
 - 127,000,000 원

5. 디아코니아포럼 사업

가. 사업목표

- 한국기독교사회복지실천학회와 협력하여 기독교 사회복지 관련 정책 개발

나. 사업기간

- 2021년 1월 ~ 2021년 12월

다. 사업내용

- 기독교사회복지 영역별 세미나 진행
-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 세미나

라. 사업주관: 한국교회봉사단 디아코니아포럼

마. 사업예산

- 13,000,000 원

6. 모금 캠페인 사업

가. 사업목표

- 교회, 개인, 크리스천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모금 캠페인

나. 사업기간

- 2021년 1월 ~ 2021년 12월

다. 사업내용

- 북한 영유아 영양지원 캠페인 진행
- 온라인, 신문, 방송 등을 통한 모금 캠페인 전개
- 캠페인 연예인 홍보단 조직
- 기부자 상담 및 관리

라. 사업예산

- 15,000,000 원

7. 홍보사업

가. 사업목표

- 단체 및 사업 홍보를 위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사업

나. 사업기간

- 2021년 1월 ~ 2021년 12월

다. 사업내용

- 온라인 홍보
 - 한글 및 영문 홈페이지 운영
 -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홍보 (페이스북, 유튜브)
 - 온라인 뉴스레터 발행
- 언론사 홍보
 - 사업별 보도자료 배포
 - 사업현장 동행취재 지원

- 신문 및 방송 광고
- 홍보물 제작
 - 2020년 연차보고서 제작
 - 홍보용 리플렛, 홍보키트 제작
 - 각종 자료집 제작
- 라. 사업예산
 - 15,000,000원

8. 연대사업

- 가. 사업목표
 - 유관 단체들과의 네트워크 및 협력
- 나. 사업기간
 - 2021년 1월 ~ 2021년 12월
- 다. 사업내용
 - 1) 한국교회총연합
 - 2) 한국기독교사회복지실천학회
 - 3) 한국자원봉사협의회
 - 4) 종교계자원봉사협의회
 - 5) 전국재해구호협회
 - 6) 각 교단 사회봉사부 및 교계연합단체
- 라. 사업예산
 - 7,000,000원

7. 2021년 예산(안)

Korean Diakonia 2021 예산(안)

(2021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 수입부

(단위 : 원)

관	구 분	2020년 결산금액	2021년 예산금액
전기이월금	전기이월금 (기본자산제외)	161,585,267	202,728,738
회비	회 비	56,700,000	60,000,000
후원금	사업후원금	651,074,547	100,000,000
기타수입	잡이익,기타수입,임대보증금	8,958,594	8,000,000
총 계		878,318,408	370,728,738

■ 지출부

(단위 : 원)

관	구 분	2021년 예산금액
사무비	운영비	31,728,738
	업무비	5,000,000
	인건비	77,000,000
	소 계	113,728,738
사업비	1. 조직사업	5,000,000
	2. 국내외 재난구호 사업	20,000,000
	3. 국내 소외계층 지원사업	55,000,000
	4. 북한사업	127,000,000
	5. 디아코니아포럼사업	13,000,000
	6. 모금캠페인사업	15,000,000
	7. 홍보사업	15,000,000
	8. 연대사업	7,000,000
소 계		257,000,000
총 계		370,728,738

8. 정관 대조표

현행	개정(안)																																																																					
<p>제9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①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p> <p>1. 이사장 1인</p> <p><신설></p> <p>2. 감사 2인</p> <p>3. 이사(이사장을 포함한다.) 17인</p>	<p>제9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①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p> <p>1. 이사장 1인</p> <p>2. 상임이사 1인</p> <p>3. 감사 2인</p> <p>4. 이사(이사장을 포함한다.) 17인</p>																																																																					
<p>제14조(임원의 직무) ① (생략)</p> <p><신설></p> <p>② (생략)</p> <p>③ (생략)</p> <p>1. (생략)</p> <p>2. (생략)</p> <p>3. (생략)</p> <p>4. (생략)</p> <p>5. (생략)</p>	<p>제14조(임원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p> <p>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수행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3. <현행과 같음></p> <p>4. <현행과 같음></p> <p>5. <현행과 같음></p>																																																																					
<p><별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th> <th>자산 분류</th> <th>면적 (㎡)</th> <th>평가액 (원)</th> <th>출연자</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 style="writing-mode: vertical-rl; text-orientation: mixed;">기본재산</td> <td>종로구 연지동 136-46 기독교회관 705호</td> <td>건물</td> <td>13평</td> <td>11,880,000</td> <td>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대표 손인용</td> <td>임대</td> </tr> <tr> <td></td> <td>대지</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출연금</td> <td></td> <td>47,540,000</td> <td>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대표 손인용</td> <td></td> </tr> <tr> <td></td> <td>소계</td> <td></td> <td>59,420,000</td> <td></td> <td></td> </tr> </tbody> </table>		자산 분류	면적 (㎡)	평가액 (원)	출연자	비고	기본재산	종로구 연지동 136-46 기독교회관 705호	건물	13평	11,880,000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대표 손인용	임대		대지		-				출연금		47,540,000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대표 손인용			소계		59,420,000			<p><별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6" style="text-align: center;">기본재산목록</th> </tr> <tr> <th></th> <th>소재지</th> <th>자산 분류</th> <th>면적 (㎡)</th> <th>평가액 (원)</th> <th>출연자</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 style="writing-mode: vertical-rl; text-orientation: mixed;">기본재산</td> <td></td> <td><삭제></td> <td></td> <td><삭제></td> <td><삭제></td> <td><삭제></td> </tr> <tr> <td></td> <td></td> <td>대지</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출연금</td> <td>59,420,000</td> <td>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대표 손인용</td> <td></td> </tr> <tr> <td></td> <td>소계</td> <td></td> <td>59,420,000</td> <td></td> <td></td> </tr> </tbody> </table>	기본재산목록							소재지	자산 분류	면적 (㎡)	평가액 (원)	출연자	비고	기본재산		<삭제>		<삭제>	<삭제>	<삭제>			대지	-					출연금	59,420,000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대표 손인용			소계		59,420,000		
	자산 분류	면적 (㎡)	평가액 (원)	출연자	비고																																																																	
기본재산	종로구 연지동 136-46 기독교회관 705호	건물	13평	11,880,000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대표 손인용	임대																																																																
		대지		-																																																																		
		출연금		47,540,000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대표 손인용																																																																	
		소계		59,420,000																																																																		
기본재산목록																																																																						
	소재지	자산 분류	면적 (㎡)	평가액 (원)	출연자	비고																																																																
기본재산		<삭제>		<삭제>	<삭제>	<삭제>																																																																
			대지	-																																																																		
			출연금	59,420,000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대표 손인용																																																																	
		소계		59,420,000																																																																		

9.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하며, 영어명칭은 “Korean Diakonia” 라 한다.

제2조(목적) 이 법인은 비영리단체지원법의 규정에 따라 한국기독교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협의체로서 교회의 본래의 사명인 이웃사랑의 구현과 실천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활동을 전개, 협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 ①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3길 29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신관401호에 둔다.
- ② 법인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시도 지회를 둘 수 있다.
- ③ 법인에 민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지회를 둔다.
 1. 서울지회: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3길 29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신관401호
 2. 경기지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956
 3. 인천지회: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18
 4. 충청지회: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378
 5. 영남지회: 경북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331
 6. 호남지회: 광주광역시 남구 진다리로 12
 7. 강원지회: 강원도 춘천시 금강로 68-6

제4조(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내 . 외 및 북한지역의 각종 재난에 대한 구호 및 복구사업과 인도적 지원사업
2. 소외계층에 대한 구제 사업
3. 기독교 기관의사회복지 학술 및 연구프로그램 개발, 교육
4. 자원봉사운동 전개 및 교육
5. 홍보 및 출판
6. 사회복지 전문화를 위한 엑스포 및 총람편찬사업
7. 국내 . 외 사회복지사업 관련 기관과의 교류 및 지원
8. 국내외 기부 문화 확산 사업
9.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및 수익사업

2장 회 원

제5조(회원) ①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개인, 기관, 단체로 한다.

② 회원의 구분: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단체회원: 기독교 각 교단 및 교회, 기독교사회복지관련 기관, 시설, 단체

2) 개인회원: 기독교사회복지에 관심 있는 자로 본회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는 자

③ 가입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①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감사 2인

3. 이사(이사장을 포함한다.) 17인

제10조(임원의 선임) ①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④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 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 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4장 총 회

제15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제15-2조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15-2조(대의원)

- ① 대의원은 법인의 이사, 감사, 실행위원, 각 지회에서 2인, 각 전문사업단에서 선출된 2인으로 한다.
- ② 1항에 해당되지 않은 회원단체에서 각 1인으로 구성한다.

제16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월 전까지 소집하여,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4조 제5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8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19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5장 이사회

제21조(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2조(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년 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4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 (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6장 재산과 회계

제26조(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7조(재산의 관리)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재원) ①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3. 각종 기부금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5. 기타

② 법인이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회계년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0조(기부금모금액 및 사용실적 공개) 당해 사업 년도의 기부금 모금액 및 사용실적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연 1회 이상 공개해야 한다.

제31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법인은 회계연도 1월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다만,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2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3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차입금) 법인이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 결을 거쳐야 한다.

7장 사무 부서

제35조(사무국)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본회의 사업을 위하여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총장은 이사회 의 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 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36조(실행위원 구성과 운영 규정) 법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실행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총회에서 정한다.

제37조(전문기구 설치와 운영 규정)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해 전문기구를 두고 그 설치와 운영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총회에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38조(법인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3이상의 찬성으로 의 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으며,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39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하 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 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 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 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2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 결을 거 쳐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②(설립당시의 임원선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인 설립당시 발기인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2006년 9월 28일 제정
 2008년 4월 25일 개정
 2008년 7월 10일 개정
 2009년 5월 12일 개정
 2016년 4월 21일 개정
 2018년 12월 26일 개정
 2019년 4월 19일 개정
 2020년 6월 26일 개정

별지1

		자산 분류	면적 (㎡)	평가액 (원)	출연자	비 고
기본 재산	종로구 연지동 136-46 기독교회관 705호	건물	13평	11,880,000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대표 손인웅	임대
		대지		-		
		출연금		47,540,000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대표 손인웅	
		소계		59,420,000		

10. 회원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정관 제5조 3항에 의거하여 회원의 종류와 가입절차,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회원의 자격) 정관 제5조 2항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 ① 교육부 학위인정 신학교를 보유한 기독교 교단
- ② 위 ①항의 교단에 소속된 교회
- ③ 위 ①②항에 해당하는 교단 및 교회가 설립 혹은 운영하는 사회복지관련 기관, 시설, 단체
- ④ 기독교사회복지에 관심이 있는 자로 본회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는 자

제3조(회원의 가입)

- ① 본회의 회원이 되려는 자는 별표(1) 혹은 별표(2)의 가입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사무국은 가입신청자의 자격기준을 아래와 같이 점검하여 이상이 없을 시 이사회에 부의한다.
 - 가. 해당교단 혹은 교회나 기관이 소속된 교단이 교육부 학위인정 신학교를 보유한 교단인지 여부
 - 나. 신청 개인·기관/단체·교회·교단 및 소속·관련 기관이 제2조①에 해당되는 교단에 의해 이단관련 규정이 되었는지 여부
 - 다. 회원가입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 및 연락처의 진위 여부
- ③ 가입승인에 관한 이사회 의결은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2/3 이상의 의결로 한다.

제4조(회원권리의 행사)

- ① 단체회원은 그 대표자가 회원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대리인으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② 대리인은 반드시 회원단체 소속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로 행사할 수 있는 회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 ③ 대리권을 행사하는 대리인은 서면 위임장을 사전에 사무국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회비 및 제 부담금) 회원의 회비는 다음과 같으며 당해연도 12월말까지 사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① 개인회원 월 1만 원 이상
- ② 단체회원 월 10만 원 이상

제6조(회원권의 제한) 정관 제7조에 명기된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회원은 그 권리를 제한 받을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 2016. 3. 23.

